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년월일 : 1998. 12.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 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에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나. 직권면직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 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 (안 제10조)
- 다.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를 향후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로 개정 (안 제11조)
- 라.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 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표준안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다. 신규조문대비표 : 별 첨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증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근무상한연령) 1~2 (생략)</p> <p>3.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제8조(근무상한연령) 1~2 (현행과 같음)</p> <p>3 &lt;삭 제&gt;</p> <p>4 &lt;삭 제&gt;</p> <p>제10조(직권면직)----- ----- ----- -----</p> <p>1.-----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p>

현 행

개 정 안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

2. ~ 4. (생략)

2. ~ 1. (현행과 같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 2.(생략)

1. ~ 2.(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신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알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p>

## 관계법령발취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법률)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공무원 61세

6급이하공무원 58세